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5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4. 정윤주 의원 외 14명(의안번호 79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성북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공공기관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규정(안 제8조~제11조)
- 라.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규정(안 제12조~제16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규정 (안 제 17조~제22조)
-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규정(안 제23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공포, 2022.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2021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는 바,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부문별·단계별 감축 목표 설정·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
- 성북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2012년 3월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의 폐지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번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6조 : 구청장·공공기관·구민의 책무
 - 기본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구청장과 공공기관,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과 구민이 더 이상 단순 참여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 전환사회로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 안 제11조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성북구 차원에서 탄소중립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법 제12조¹⁾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 ~ 안 제16조 :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²⁾ 구성

-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1)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연 2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 안 제18조 ~ 안 제22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 관내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³⁾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시설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며,
- 자동차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⁴⁾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관용차량을 구매 할 경우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 탄소 흡수원⁵⁾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

3)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4)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탄소중립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 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함.

－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규정함.

■ 안 제23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안 제24조 : 구청장은 법 제65조에1항⁶⁾에 따른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안 제25조 : 탄소중립 실천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6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 법 제68조제1항⁷⁾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7조 : 5년마다 탄소중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함.

6) 「탄소중립기본법」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7)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28조 : 소관부서 국장급 이상을 구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함.
- 부칙 안 제2조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으로 봄.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체 조례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이호건 의원 외 10명(의안번호 80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호건 의원)

가. 제안이유

지능지수가(IQ 71~84) 사이로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6조~제7조)
- 마.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⁸⁾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부진아)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음.
- 느린학습자란 지능지수(IQ) 70~85 수준으로 평균 지능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양쪽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계선 아동의 대부분이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가 결핍된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대체로 크게 나타남.
-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립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이 필요하나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현재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법령 및 기초 통계자료 등이 없는 상태이며, 느린학습자 교육을 위해 201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202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 :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 정의하였으나,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음. 본 조례안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 제8조(지도·감독)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센터의 위탁,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공동사업 추진)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지원사업) :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광역단체 4곳(경기, 강원, 서울, 광주광역시)과 기초단체 12곳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느린학습자(학습부진아, 경계선지능인)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5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김육영 의원 외 19명(의안번호 81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
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써,

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7.27. 공포, 2022.4.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6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에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 12. 31.에서 2027. 12. 31.로 5년 연장, 한옥보전지원기금은 폐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장애인체육기금 존속기한 연장
나. 한옥보전지원기금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기금¹⁰⁾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한옥보전지원기금¹¹⁾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 2018년 설치된 장애인체육기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7억1,591만원으로,
- 장애인체육기금은 법정이 아닌 임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한옥보전지원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 시 보조지원
2. 한옥 외관, 내부 수선 시 보조 또는 용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 시 보조지원

- 같은 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한옥보전지원기금은 2012년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 용자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한옥 수선 등 보조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시행중이고, 구지원금액이 시 지원금의 약 1/3 수준이며 이중지원 불가로,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성북구 소재 한옥 19가구 중 1가구(5.26%)만이 성북구에 지원 신청하였고, 18건(94.74%)은 서울시에 지원 신청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7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실정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의 해임 기준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안 제7조)
- 나.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자에 상위법 적용(안 제13조)
- 다.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¹²⁾을 임원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의 해임기준,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제3항 : 이사장의 연임기준을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개정하여 이사장의 해임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신설하였음.

－ 법 제58조제4항 → 제58조제4항 및 제5항¹³⁾

■ 안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항, 제2항, 제3항 전체를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인용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법 제60조

조 례 현 행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
------------------	--

12)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1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 례 개정안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법 제60조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안 제17조 제2항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신설하

여 임면 기준을 명확히 함.

-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법 제63조를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20.>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의 해임규정,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8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개 요
 - － 사업목적 :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직원
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 추구
 - － 사업용도 :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 － 사업기간 : 2023년~2024년(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소요예산 : 6,187,000천원(구비-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단위: 천원)

총사업비	공사비	철거비	용역비	기타비	비고
6,187,000	5,587,000	44,000	353,000	203,000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m ²)	금액	비고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사업(안)	성북구 정릉동 966-125 일대	취득 건물신축	1,674.2	6,187,000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966-125 일대, 토지 397m²(120.3평)에 연면적 1,674 m²(약 507.3평, 지상6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 예상금액은 61억8,700만원으로 공사비 55억8,700만원, 철거비 4,400만원, 용역비 3억5,300만원, 기타비 2억300만원임.
- 현재의 정릉2동 주민센터는 대지 397m²(120.3평)에 연면적 557.48(168.9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978년에 건축되어 44년이 경과하였으며 우리구 20개 동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었음.
-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이 필요한 곳으로,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9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전자고지 등에 관한 지원제도인 마일리지 적립이 폐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¹⁴⁾이 폐지

14) 지방세 전자고지 등에 따른 납세자 마일리지 제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마일리지 제도 시행 : 2007년 10월 최초 시행(서울시만 운영)
- 운영 방법 :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이메일 등)로 받아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경우 건당

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¹⁵⁾)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2호

- 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 800원
- 제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

350 ~ 850원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는 ETAX로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충전 등 사용 가능(서울시만 운영)

- 2010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고지 등 신청자에 대해 세액공제(150~500원) 제도 전국적 도입 · 시행
- 마일리지 운영상 문제점 : 비교적 소액으로 인해 마일리지 미사용에 따른 소멸시효액 증가, 서울시만 마일리지 · 세액공제 중복운영으로 혼란 및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우 : 고지서 1장당 600원 → 1,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액(세수감소분)은 2021년 등록면허세 기준 으로 2022년 개정 전 6,515건 508만원, 2023년 개정 후 726만원으로 추 계되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3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0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4,178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4,178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5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1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2.6.14,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정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2022. 6.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¹⁶⁾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안 제2조 정의규정 중 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하지 않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를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5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2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위탁기간 만료(2023. 1. 31.)가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①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
- 규 모 : 대지면적 179㎡, 연면적 244.98㎡(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2층	73.26	교육장(봉제)	
1층	85.86	소회의실, 사무실	
지하1층	85.86	실습실, 교육장	

② 보문동공동작업장

○ 위 치 : 성북구 지봉로20길 80

○ 규 모 : 대지면적 190.7m², 연면적 331.75m²(지상4층)

○ 시설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4층	48.76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3층	99.99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2층	99.99	교육장 및 공용장비실	
1층	83.01	집적지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패션봉제지원센터, 보문동공동작업장 시설 운영 및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¹⁷⁾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탁대상 현황

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장위동)
- 규 모 : 대지 179m²(약 54평), 연면적 244.98(약 68평, 지하1층 ~ 지상2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2층	73.26	교육장(봉제)	
1층	85.86	소회의실, 사무실	
지하1층	85.86	실습실, 교육장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최초 위탁 2017. 01. 26.
(2020. 02. 01. ~ 2023. 01. 31. 3년)
 - 인력현황 : 상근 2명(센터장, 매니저)
 - 사 업 비 : 1억3,515만원(구비)
- 위탁예정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위원회 선정

나. 보문동 공동작업장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20길 80(보문동6가 73)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최초위탁 2018. 11. 1.
(2020. 02. 01. ~ 2023. 01. 31. 3년)
 - 인력현황 : 상근 1명(센터장, 매니저)
 - 사 업 비 : 6,500만원(구비)
- 규 모 : 대지 190.7m²(약 57.7평), 연면적 331.758m²(약100.5평, 지상4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비고
1층	83.01	집적지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2층	99.99	교육장 및 공용장비실	
3층	99.99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4층	48.76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 위탁예정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위원회 선정

-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주요 사무는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와 보문동 공동작업장 운영이며, 위탁 범위는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공동작업 지원, 공동판매 및 전시 등으로 지역 내에 구직을 원하는 은퇴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통한 맞춤형 봉제 실무인력 양성과 지역주민의 능력개발로 고용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 패션봉제산업은 신규인력 진입 단절 현상으로 인하여 상시적 인력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싱사와 같은 숙련공 부족이 두드러짐. 이에 영세소공인의 기술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은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3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나.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신설
- 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제3, 7, 8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제3호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제7호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제8호 일반직계약직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

■ 안 제2조 제2항 :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정비

- 지급대상 : 불법행위 담당업무, 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상시적으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내근직원 제외)
- 지급금액 : 업무 특성,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안 제2조 제2항에 별표2을 신설하여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지정한 상시 출장 공무원은 없음.

■ 안 제4조 : 대통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

－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¹⁸⁾를 준용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현행화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 울특별시 70,000, 광 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4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 신설(안 제5조)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신설
- 나.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6조)
- 국 명칭 변경 : 복지문화국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 과 변경 사항
 - 과 명칭 변경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신설

- 부서 이관 : 교육지원과 → 복지교육국 / 문화체육과 → 행정문화국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복지정책과 : 1인 가구 지원 추가
- 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7조)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과 변경 사항
 - 도시재생과 폐지
- 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9조)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 과 변경 사항
 - 주민공동체과 폐지
 - 과 명칭 변경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 마.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10조)
 -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 과 변경 사항
 - 과 명칭 변경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지역경제과 신설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도시안전과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추가
- 바. 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11조)
 - 국 명칭 변경 : 행정국 → 행정문화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과 변경 사항
 - 부서 이관 : 교육지원과 → 복지교육국 / 문화체육과 → 행정문화국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자치행정과 :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운영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 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

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편 내용은

■ 한시기구 신설(안 제5조)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신설

■ 국명칭 변경

－ 복지문화국 → 복지교육국

－ 행정국 → 행정문화국

■ 과 명칭 변경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과 신설

－ 아동청소년과

－ 지역경제과

■ 과 폐지

－ 도시재생과

－ 주민공동체과

■ 부서 이동

－ 교육지원과 : 행정국 → 복지교육국

－ 문화체육과 : 복지문화국 → 행정문화국

■ 사무분장 변경

－ 복지정책과 : 1인 가구 지원 추가

－ 도시안전과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추가

－ 자치행정과 :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운영 추가

○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과 명칭 변경 : 어르신장애인과
-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하고 장애인을 동격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어르신하고 장애인 사이에 (점)을 삽입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과명을 변경하고자 수정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4
----------	-------

제안 연월일: 2022년 11월 22일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하고 장애인을 동격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어르신하고 장애인 사이에(점)을 삽입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과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수정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u>어르신장애인과</u>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생략)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 - <u>어르신·장애인복지과</u>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단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단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을 둔다.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한시기구) 부구청장 밑에 한시기구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여성복지 및 보호,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
6. 교육지원, 친환경무상급식,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
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대한 사항

5. 하수·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수습·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 공무원, 화장실 청소·장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 사업 등), 고용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
4.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

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업무,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

5.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분진·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문화재,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 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5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제3조 관련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 5급 상당 10% → 15% 이내 (증 5%)
- 6급 상당 40% 이내 → 45% 이내 (증 5%)
- 7급 상당 20% 이내 → 25% 이내 (증 5%)
- 8급 상당 이하 30% 이상 → 15% 이상 (감 15%)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 1,576명

- 5급 : 68명 → 69명 (증 1명) (본청 32명 → 33명)
- 6급 이하 : 1,497명 → 1,496명 (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총 정원 변동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11. 4. ~ 2022. 11. 7. 의견제출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1단 신설(도시정비신속추진단)로 5급 1명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1명 감원과 정원책정기준 별표2, 별정직공무원 급별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별표 2 : 별정직 정원채정기준 현재 기준으로 개정

- 5급 상당 10% 이내 → 15% 이내
- 6급 상당 40% 이내 → 45% 이내
- 7급 상당 20% 이내 → 25% 이내
- 8급 상당 이하 30% 이상 → 15% 이상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 5급 1명 증원, 일반직 6급 이하 1명 감원 : 총 정원 변동 없음
- 5급 68명 → 69명
- 6급 이하 1,497명 → 1,496명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6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민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 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나.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 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거소' 표현 삭제(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

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2조제9항 삭제

사.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아.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삭제(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자.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 2022.10.27.)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¹⁹⁾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19세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

19)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권자 연령 규정 삭제

- 변경 이유는 법 제5조제1항²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 상위법률인 주민투표법이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개정된 법 제7조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현 행	개 정(' 22. 10. 27. 시행)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u>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u>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u>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u>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 제1항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

20)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표현 삭제

- 제2항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는 현행 조항 후단에 “다만, 법 제16조제1항²¹⁾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를 변영하려는 것임. 이는 ‘동’ 보다 작은 구역에서 주민투표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통·반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조문 중의 내용과 괄호 제목이 맞지 않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로 변경.

- 조문 중 ‘별지 6호’ 서식과 부합하게 주민투표청구서 작성 내용의 순서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로 변경

■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청구인서명부’ 열람과 관련하여 열람 대상인 청구인서명부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열람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을 괄호로 약식 처리한 것임.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주민투표청구심의회) : 개정된 법 제12조의 2²²⁾ 신설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

21)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함.

-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 법 제12조의2제4항이 규정한 부분 중 심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조문 내에 상위법 조문 근거를 넣어 법과 조례의 연계적 이해를 돕고 있으며, 심의회의 위원수 7명과 심의회의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는 규정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삭제함.
- 안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 임기 2년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등 :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한 회의 소집, 의장의 직무대행, 회의운영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²³⁾이 적용되

22)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23)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

므로 삭제(안 제12조제9항 삭제)

- 안 제15조 심의회 간사 : 심의회 간사와 주민투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명 관련 사항을 규정
- 안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 : 심의회 운영세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

■ 부칙 : 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

-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사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며, 이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부칙 시행 관련 제1조²⁴⁾를 따른 것임.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4) 부 칙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7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안 제10조의2)
- 나. 간사 선임방법 개선(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0조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사업 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31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함.
- 안 제15조(간사) : 간사의 후보자격을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까지 확대하고, 간사 선임을 주민자치회 호선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하고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도록 간사 선임 방식을 개정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사업 실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간사의 선임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2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8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11. 22.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진로·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

- 1) 발급 대상을 해당 연도에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
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사업 현황(2022년→2023년)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진로·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시행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 16세 추가
- 대 상 자 : 2023년 만13세 3,281명 + 만16세 3,640명 → 6,921명 예상
- 소요예산 : 2022년-2억9,550만원 → 2023년-6억2,889만원(예상)
- 사 용 처 : 140개소(2022. 11. 1.기준)

○ 카드발급 실적

(2022.10.기준)

연 도	대상인원(명)	발급인원(명)	발급률(%)
2022	3,373	2,232	66
2021	3,394	2,556	75
2020	3,802	2,860	75
2019	3,451	2,987	87
2018	3,367	3,005	89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온라인 수업 등 이용자 활동 및 시설 운영 제한

○ 가맹점 현황

(2022.10.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문화 체험	학원 교습	체육 활동	서점	진로 직업	미술 박물관	영화 공연	기타	합계
2022	31	22	15	18	8	11	6	29	140
2021	32	24	15	19	11	11	8	31	151
2020	27	24	13	15	16	11	5	34	145
2019	46	24	10	15	15	11	5	13	139
2018	22	20	15	14	12	11	3	32	129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폐업 등으로 2022년 가맹점 수 감소

○ 예산집행실적

(2022.10.기준, 단위:천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2022	295,500	127,667	167,833	43	하반기 사용이 집중됨
2021	311,280	233,726	77,553	75	
2020	336,300	256,048	80,252	76	
2019	294,800	263,848	34,952	89	
2018	307,850	237,125	70,725	77	

※ 월별 집행률 : 1월~10월까지 50%, 11월~12월 75% 이상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발급대상자)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해당 연도에 만13세(중학교 1학년)가 되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동행카드의 지원 대상을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지급.

- 안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을 ‘연간 10만원 포인트’를 ‘상·하반기 각 5만원 포인트’로 변경함.
 - 제5조 제2항에 동행카드 발급 시기를 반기별 신청 원칙을 신설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 16세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